

- 온라인 신청 방법 : 「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」(<http://crims.police.go.kr>) 이용

**기관(시설)장의 시설정보 사전등록**

- 사이트접속
- 공인인증서 로그인
- 기관(시설) 정보등록 (사업자등록증 등)
- 기관(시설)ID부여, 검증번호 등록

**취업예정자 동의**

- 사이트 접속
- 공인인증서 로그인
- 기관(시설) 정보 확인
- 동의서 작성 (기관 ID, 검증번호 입력)
- 본인 인증
- 동의

**기관(시설)장 신청, 발급**

- 사이트접속
- 공인인증서 로그인
- 동의목록 확인
- 기관(시설)장 신청
- 동의

※ 성범죄경력 신청·회보의 오·남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실시(24시간 신청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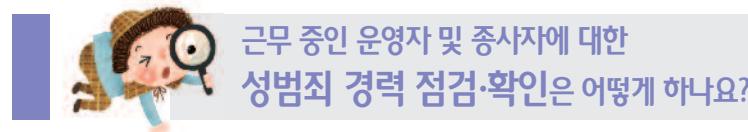
## ② 행정기관의 조회 신청 방법

설치 또는 설립인가·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,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」을 통해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

## ③ 취업자 본인의 조회 신청 방법

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·하가증 등 기관 증명 서류와 함께 경찰서(형사과등)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

※ 취업·운영 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하여 성범죄경력회신서를 제출한 경우 경력 조회 한 것으로 간음



### ■ 점검·확인 의무

행정 기관은 연1회 이상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는지를 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」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확인·점검

### ■ 점검 체계

#### 중앙행정기관

- 시·도에 점검계획 수립 안내
- 시·도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

#### 여성가족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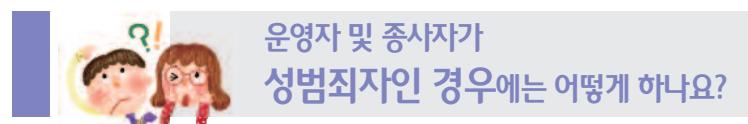
- 연간 점검계획 수립요청 안내공문 발송
- 점검확인 결과를 「성범죄자일람e」에 3개월간 공개

#### 지방자치단체 (시·도 및 시·군·구, 교육청 등)

- 점검계획 수립
- 관할 아동청소년관리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
- 현장 점검 실시(필요시)
- 점검 결과를 관할 상위 기관에 제출

####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

- 성범죄경력 점검·확인을 위한 요청자료 제출



### ■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즉시 해임 조치

※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2항)

### ■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및 기관 폐쇄 요구

※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미이행 시 관계 행정기관 장은 폐쇄, 등록·허가 등 취소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8조)

### ■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3항)

※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(1차 위반 : 300만원, 2차 위반 : 400만원, 3차 이상 위반 : 500만원)

#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





##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?

### 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
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\*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\*\*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(또는 치료감호)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,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(노무제공 포함)을 할 수 없습니다. 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)

\*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: '06.6.30 이후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
\*\* 성인 대상 성범죄자 : '10.4.15.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

### ■ 아동·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

아동·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·추행 관련 범죄, 디지털 성범죄,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.

- 강간, 강제추행, 미성년자 간음·추행,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·추행 등 강간·추행 관련 범죄
- 아동·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, 카메라 등 이용 촬영, 통신매체이용 음란, 음화반포·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
- 아동·청소년 성매수, 인신매매, 성매매 유인·권유·강요·알선 등 성매매 범죄
- 기타 공연음란,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 
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
### ■ 취업제한 대상자/기간

-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 
(최대 10년간 취업제한)
- '18.7.17.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 
(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·3·1년 차등 적용)

형의 종류	형 확정일		
	'06. 6. 30. ~ '09. 12. 31.	'10. 1. 1. ~ '18. 7. 16.	'18. 7. 17. 이후
3년 초과 징역·금고형	형 확정된 날부터 5년 제한	형 집행이 종료(유예)된 날부터 5년 제한	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 선고 (최대 10년)
3년 이하 징역·금고형	형 확정된 날부터 3년 제한	형 집행이 종료(유예)된 날부터 3년 제한	
벌금형	형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	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	



## 성범죄자는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없나요?

성범죄경력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「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」에 취업이 제한됩니다.

### 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

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	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
학원, 교습소, 개인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, 평생직업교육학원 등	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,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
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특화 시설, 청소년야영장, 유스호스텔 등	청소년이용시설 공연장, 영화상영관, 박물관, 미술관, 회랑, 조각공원, 도서관, 문고, 문화의 집, 복지회관, 문화체육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지방문화원, 국악원, 전수회관, 과학관, 평생교육기관, 자연 휴양림 휴양시설, 수목원, 사회복지관, 시민회관, 어린이회관, 공원, 광장, 고수부지 등
체육시설 체육도장(태권도, 유도, 검도, 권투 등), 수영장, 당구장, 골프장, 체력단련장, 종합체육시설 등(※ 무도학원, 무도장 제외)	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쉼터
어린이집 국립어린이집, 법원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, 거점어린이집, 부모협동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 등	아동복지시설 어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자료시설, 공동 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, 지역 아동센터 등
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,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일반·청소년·외국인지원시설, 그룹홈 등	의료기관(의료인 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) 병원, 의원 등
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복합유통개인제공업, 청소년게임 제공업, 청소년노래연습장업,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일반PC방, 멀티방, 오락실, 노래방, 연예기획사 등	공동주택관리사무소(경비업무 종사자), 경비업 법인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
청소년활동기획업소 영리목적으로 청소년활동기획·주관·운영하는 사업장 등	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(가정방문 학습지 교사)

### 〈2018년 신규 적용 기관〉

#### - 2018. 7. 17. 신규 적용 기관

대학	시·도교육청·교육지원청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위센터, 워스클 등
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의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드림스타트	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 센터, 제28조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 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,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·단체 등
- 2018. 9. 14. 신규 적용 기관	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

## 채용 예정자 및 운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?

### ■ 취업·운영 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

#### ○ 신청자

-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: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
- 행정기관의 장 :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

#### ○ 구비서류

-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, 취업예정자의 동의서, 인·허가증 등  
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
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지 제9,10,11호 서식)

### ■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

#### ①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의 조회 신청 방법

- 오프라인 신청 방법 : 경찰서(형사과)에 직접 신청

### 취업예정자

- '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'를 작성하여 취업하고자하는 기관에 제출

###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

-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받아 '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' 작성
- 인·허가증 등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경찰서(민원실 또는 형사(수사)과)에 제출

### 해당경찰서 담당자

- 관할 경찰서에서는 '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'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회신

